

● 교육부공고 제2024-36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24일

교육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과 교육부장관이 표준보육과정을 개발·보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이 2024년 6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표준보육과정 0~2세 부분을 일부 개정하여 영유아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교육 및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 상황에서 영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충하기 위해 0~2세의 놀이를 통한 배움 및 3~5세 누리과정 연계 강화를 위해 표준보육과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별표 8의4)

2. 주요내용

가. 0~1세 보육과정과 2세 보육과정의 기본생활, 신체운동,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6개 영역을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으로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atalie108@korea.kr

- 팩스 : 044-203-7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전화 044-203-7130, 팩스 044-203-7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의4의 제2호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가목 1) 중 “어린이집의”를 “각 기관의”로 한다.

다. 구성의 중점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가 개별적인 특성을 지닌 고유한 존재임을 전제로 하며, 구성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1) 0~5세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 2)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 3)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 4) 0~5세 영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 5)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별표 8의4의 제3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교수·학습

- 1) 영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 2)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 3) 영유아가 다양한 놀이와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실내외 환경을 구성한다.
- 4) 영유아와 영유아, 영유아와 교사, 영유아와 환경 사이에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5)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영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 6) 개별 영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7) 영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